

「하나 청년미래적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 ① 이 특약은 「하나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합니다) 거래에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적금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1.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병적증명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합니다) 이하인 사람
(단,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게 된 자가 해당기간 중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확인합니다)
 - 가. 「병역법」 제 16조 또는 제 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 21조, 제 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합니다)
 - 나. 「병역법」 제 26조제 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다. 「군인사법」 제 2조제 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 12조제 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 12조제 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합산매출액^(주1)이 3억원 이하일 것(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소상공인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가입일 현재 사업 운영 상태 및 업종^(주2)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주 1)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연매출액을 합산
 - ※ 주 2) 신청 시점에 사업운업을 하지 않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가구소득 기준^(주3)을 충족하는 사람
 -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200% 이하일 것(단,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본조 2호 가목,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하 “맞벌이 2인가구”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적용)
 - 나. 가구원^(주4)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합니다)

※ 주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 4)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구원을 확정합니다.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5)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 5)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② 이 적금에 가입한 후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③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고,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④ 이 적금은 이 적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합니다)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⑤ 이 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1 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 91 조의 22 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도약계좌”라 합니다)와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22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특정기간에 이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하 “연계가입(갈아타기)”라 합니다) 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⑥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포함)으로 합니다.

제3조 신청 및 가입

① 이 적금은 신청 후 제 2 조의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 한해 특정 지정 기간에 가입합니다.

② 이 적금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 본인의 소득구분에 따라 일반소득자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③ 제 1 항에 따른 특정기간 중에 19 세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기간의 첫 영업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4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

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자유적립식)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가입일부터 3년으로 합니다. (단, 만기일 전에 해지 할 경우 만기해지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① 이 적금의 초입금 저축금액은 0 원 이상 1 천원 단위, 2 회차 이후 저축금액은 1 천원 이상 1 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 만원의 범위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주6) 납입한도는 6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 6) (예시) ‘26.7.20 일 가입 시

1 년차(‘26.7.20~‘27.7.19), 2 년차(‘27.7.20~‘28.7.19), 3 년차(‘28.7.20~‘29.7.19)

② 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한 자는 초입금 0원으로 가입되며, 도약계좌 해지 후 이 적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한 자는 이 적금 가입 후 특정기간^(주7) 내에 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④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7) 상세한 기간은 상품설명서를 참조 바랍니다.

제6조 이자 지급방법

① 이 적금의 기본금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② 이 적금의 만기금리는 제 1 항의 기본금리에 제 7 조의 우대금리를 합하여 계약기간동안 적용합니다.

③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조 제 2 항의 만기금리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제 9 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한 경우, 하나은행은 제 1 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가입 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 항목	내 용
급여(가맹점대금)이체 (연 1.2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24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8) 또는 가맹점(결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카드 결제 (연 0.6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24회차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실적(하나머니 충전방식 제외)을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목돈마련 용원 (연 0.50%)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또는 예금을 미 보유한 경우(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미래적금은 예외)
소득플러스 (연 0.50%)	이 예금의 가입 신청 시점에 확인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주9)
청년재무상담 (연 0.20%) ^(주1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청년재무상담*을 이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재무상담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이수한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주8) 급여 입금 인정기준

-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 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주9)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군장병급여) 가입자는 미적용

(주10)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올바른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재무상담 서비스로, 재무상담 방법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www.kinfa.or.kr/fill4young)

제8조 세율의 적용

- ① 제 5 조에 따라 납입된 저축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1.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25 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이하 “과세특례 요건”이라 합니다)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2.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제 9 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는 제외합니다)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3.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
- ③ 제 10 조제 8 항에 따른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 ① 이 적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이하 “특별중도해지”라 합니다)하는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를 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이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 61 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중병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① 정부기여금은 진흥원이 제2조의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여금을 말합니다.

1.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

2. 이 적금의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 (단, 제 2 항에 따른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가 퇴직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 사유는 일반형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합니다)

② 정부기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래 기준에 따라 진흥원이 지급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여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일반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소득자

2. 일반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3. 우대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4. 우대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주 11)

5. 우대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주 11) 직전년도에 생애 최초 취업 후 신청 시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

유형 ^(주 12)	대상	개인소득		가구소득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일반 (맞벌이 2인가구)	
일반형	일반 소득자	6,000 만원 이하	4,800 만원 이하	200% 이하	6%
	소상공인	연 매출액 3 억원 이하		(250%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	3,600 만원 이하	2,600 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12%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6,000 만원 이하	4,800 만원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소상공인	연 매출액 1 억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주 12) 유형은 가입 시 확정되며, 가입 후 변동될 수 없음(단, 본조 제 6 항에 따른 변동은 가능합니다)

③ 제 2 항에 따른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은 제 5 조에 따른 매월 및 연간 저축한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제 2 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1 항을 기준으로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신청 시점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업종이면 중소기업 재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 계약기간 중 29 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주 13)}해야 합니다. (단, 이직은 계약기간 중 2 회까지 허용)

※주 13) 중소기업 근로기준 확인은 만기 전월에 실시하며, 가입일부터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중소기업 근속기간 합산이 29개월 이상이면서 이직 횟수가 2회 이하이어야 요건을 충족함.

- ⑥ 제 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일반형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적용합니다.
- ⑦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며, 정부기여금에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⑧ 정부기여금 지급 시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 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 ⑨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제 6 조제 4 항에 따른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조 제 8 항의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 ⑩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재가입 등

- ① 이 적금은 중도해지(제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를 포함합니다) 후 재가입 가능하나,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 가능합니다.
- ② 중도해지(제 9 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를 포함합니다) 후 재가입 시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주 14)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 14)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버림)

제12조 기타

- ① 이 적금은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 ②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제 10 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나이요건과 제 2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소득기준은 진흥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 ④ 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 10 조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이 적금의 가입대상 청년의 수가 제 10 조에 따른 정부기여금 지급 가능 예산수준을 초과할 경우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개인소득 금액이 적은 청년이 우선 가입될 수 있습니다.

부 칙

1. 이 특약은 2026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